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 2334

제출일자: 2023. 5. 31.

제 출 자 : 금 천 구 청 장

1. 제안이유

다양한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으로 갑상선질환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구 보건소에서는 갑상선 기능검사(TFT: Thyroid Function Test)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갑상선 기능검사를 검사항목에 추가하고, 그 밖의 각종 검사와 수수료 및 진료비 항목을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화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항목 삭제(안 제2조제2항제2호, 제4조 삭제, 별표)
- 나. 갑상선 기능검사 항목 추가 및 수가 규정 변경(안 별표)
- 다. 수수료 및 진료비, 검사 관련 항목 일부 삭제·현행화(안 제3조제2항제7호, 제5조, 별표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1) 「지역보건법」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
- 나. 예산조치: 갑상선기능검사 실시를 위한 검사 시약 구입 예산 확보 필요. 2023년 추경예산 편성
- 다. 합 의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:

- 1) 입법예고(2023. 4. 26. ~ 2023. 5. 16.) 결과: 별도의견 없음
- 2) 신·구 조문 대비표: 별첨
- 3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: 별첨
- 4) 규제심사: 원안동의(기획예산과)
- 5)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(민원감사담당관)
- 6) 성별영향평가: 원안동의(가족정책과)

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.

제3조제2항제7호 중 "고엽제휴유증"을 "고엽제후유증"으로, "골밀도검사, 동맥경화검사"를 "골밀도검사"로 한다.

제4조를 삭제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납부방법) 수수료 및 진료비는 당일 납부하여야 하고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.

별표 제1호다목 중 "위생분야종사자"를 "식품위생분야종사자"로 하고, 같은 란 제1호다.의 금액란 중 "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제 8조"를 "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"로 한다.

별표 제2호 항결핵제보급란을 삭제한다.

별표 제4호 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검사	가. 일반건강검진]회	6,500원	
	나. 체력측정검사]회	각각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	
	다. B형간염검사]회	대회점에관한보건복다고시	
	라. C형간염검사]회	및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관	
			한보건복지부고사에의한보건소의	
			과방문당진료비	

마. 골밀도감사]회		〈삭제〉
			※ 골밀도검사 긴급으라는 관
			내의료기관에 한한다.
<u>바</u> . A형간염검사]회	17,000원	
사, 갑상산가능검사]회	_15,000원	
아. 수질검사]회	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수가	인·하기용이이닌것에 한한
		जर्रे न.	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수수료 및 진료비) ① (생	제2조(수수료 및 진료비) ① (현행
략)	과 같음)
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및 진	2
료비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항 결핵제 보급	<u><삭 제></u>
3. ~ 6. (생 략)	3. ~ 6. (현행과 같음)
제3조(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등)	제3조(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등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②
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	
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.	
1. ~ 6의2. (생 략)	1. ~ 6의2. (현행과 같음)
7. 의료급여 수급자, 국가유공자	7
·독립유공자·5.18민주유공	
자와 그 유가족, 고엽제후유	
의증환자 및 고엽제휴유증 2	<u>고엽제후유증</u>
세 환자, 참전유공자, 20년 이	
상 장기복무제대군인, 특수임	
무수행자, 장애정도가 심한 장	
애인의 진료비와 <u>골밀도검사,</u>	<u>골밀도검사</u>
<u>동맥경화검사</u> 의 수수료 ,	
8.・9. (생 략)	8.・9. (현행과 같음)
제4조(세입 재활용) ① 항결핵제	<u><삭 제></u>

보급으로 인하여 징수된 수수료 는 다음의 각호의 결핵 사업 이 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1. 결핵관리 요원의 여비보조
- 2. 결핵관리 요원의 기동력 확 보를 위한 장비구입
- 3. 우수결핵 관리요원의 시상금
- 4.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핵 사업비

제5조(납부방법) 수수료 및 진료 제5조(납부방법) 수수료 및 진료 비는 선납으로 하며, 수입증지 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. [별표] 수수료 및 진료비(제2조 관련)

비는 당일 납부하여야 하고 현 로 납부하되 필요한 경우 현금 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.

|[별표] 수수료 및 진료비(제2조 관련)

1.	가. 알반진단	1통	500원	
쟌	강 서			
쟌	난 사세감안	1통	5,000원	
결	과 서			
서	다. 위생분야	l통	위생분이종사자 등의	건강진단결과서
및	종사 건강		건강한 제8조에서	와건강단사를
진	간단결과서		<u> 규정한 수수료액</u>	동시에빌급할
서,	또는 건강진			경수로
쟤	증 <u>단서</u>			'다항에'마항을
명				대한 <i>수</i> 수료액으

1.	가. 알반진단	1통	500원	
건강	서			
진단	나. 샤세감안	l통	5,000원	
결과	서			
서	<u>다. 식품위생</u>	l통	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	건강진단결과서
및	분용사		건강한구착제조에서	와건강단사를
진단	<u>건강진단결</u>		<u> 규칙</u> 수류맥	동시에발급할
서,	과서또는건			경우 수수로는
쟤증	<u> 강진단서</u>			'다'힝에'마'힝을
명				다한 수수로 약

	라. 샤망진단	l통	500원	로한다.
	서			
	마:기타시실	l통	300원	
	광취의해			
	발급하는증			
	명서			
2	<u>가. 최료처</u>	<u>1인1</u>	<u>2,000원</u>	
항	방	<u>개월</u>		
<u>결</u> 핵		분		
제_	<u>나. 재미로처</u>	<u>1인1</u>	<u>2,000원</u>	
塩	방	<u>개월</u>		
1	가. 알 년건강	<u>분</u>]회	C E008]	
4.		I외	6,500원	
검사		1.2-1		
	나. 체략정]회	각각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	
	검사	_	및그상대기점수에관한	
	다. B형간염]회	보건복자부고시및건강보	
	검사		험요양급여비용의내역에관	
	라. C형간염	l회	한보건복지부고사에의한	
	검사		보건소의과방문당진료비	
	마: 골밀도검	l회		<u>1부위 추가 촬영</u>
	사			<u>시 3,000원 추가</u>
	<u>바. 동막경화</u>	l회		※ 골밀도검사 긴
	<u>검사</u>			급약라관내의
	<u> 사. A형간염</u>]회	17,000원	료가만에 한한다.
	<u> </u>			
	아: 수질검사]회	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	인·하기용이아
			검사가에 준한다.	닌것에 한한다.

Г		라. 샤망진단	l통	500원	로한다.
		서			
		마기타시실	l통	300원	
		공부에 의해			
		발급하는증			
		명서			
<u> </u>	'삭				
2	4)>				
	1	가. 일본장]회	C ECOS)	
	1. 검사	가: 달란건's' 감진	1외	6,500원	
	B .A.	나. 체력측정]회	각각 건강보험요양급야행위	
		검사	1퍼	및그상대기점에관한	
		다. B형 년]회	보건복자부고시및건상보	
		검사	134	헌요잉급여비용의내역에관	
		라. C형 건 염]회	한보건복지부고사에의한	
		검사	1-1	보건소의라방문당진료비	
		마: 골밀도검]회		〈삭제 〉
		사	- ,		※ 골밀도검사 긴
		 바. A형간염	l회	17,000원	라라관내의
		<u>검사</u>	•		료기관에 한한다.
		<u>사, 갑상선기</u>]회	_15,000원	
		능감사			
		아. 수잘감사]회	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	인·하용이아
				검사수에 준타.	닌 <i>것</i> 에 한한다.

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○ 갑상선 기능검사 개시·운영을 위한 해당 검사시약 등 구매비용 약 700 만원 소요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3조제2항제1호
 -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○ 본 조례안 연간 해당검사 진행을 위한 검사시약 예산이 필요하나, 검사 시약은 그 가격이 연평균 1천만원 이하로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 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하 고자 함.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양민화
연 락 처	2627 - 2615

현 행 조 례

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에서 시설을 이용한 사람, 검사를 의뢰한 사람 또는 진료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「지역보건법」 제2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1997. 9. 27., 2011. 5. 13., 2016. 5. 10.>
- **제2조(수수료 및 진료비)** ①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 5조에 따른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다. <개정 2000. 11. 24., 2011. 5. 13., 2016. 5. 10.>
 - 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.
 - 1. 건강진단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 <개정 2000. 11. 24.>
 - 2. 항 결핵제 보급
 - 3. 유료접종
 - 4. 검사
 - 5. 삭제 <2011. 5. 13.>
 - 6. 의과 진료비 <신설 2005. 12. 28.>
 - 7. 삭제 <2006. 12. 29.>
- **제3조(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등)** ① 「의료급여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 자에게는 제2조제2항 별표 중 제2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. <개정 1997. 9. 27., 2005. 12. 28., 2011. 5. 13., 2016. 5. 10.>
 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.
 - 1. 감염병 등 응급환자의 이송 및 1차 진료 <개정 2011. 5. 13.>
 - 2.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<개정 2011. 5. 13.>
 - 3. 저소득층 주민, 노인정 등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
 - 4.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
 - 5. 이재민 집단보호소 등 일시 자활할 수 없는 무의탁자의 진료
 - 6. 국가, 서울특별시 또는 금천구가 개최하는 체육행사 등 각종 공적행사 시 의료지원
 - 6의2.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(「국민건강 보험법」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만 해당한다.) <신설 2011. 5. 13.>, <개정 2016. 5. 10.>
 - 7. 의료급여 수급자, 국가유공자·독립유공자·5.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, 고엽제후유 의증환자 및 고엽제휴유증 2세 환자, 참전유공자,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, 특수임무수행자,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진료비와 골밀도검사, 동맥경화검사의 수수료 <신설 2006. 12. 29.>, <개정 2011. 5. 13., 2019. 7. 19.>
 - 8.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진료비 중 본 인부담금 <신설 2020. 9. 18.>
 - 9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건의료사업 <개정 2020. 9. 18.>
 - ③ 삭제 <2016. 5. 10.>
- **제4조(세입 재활용)** ① 항결핵제 보급으로 인하여 징수된 수수료는 다음의 각호의 결핵 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 - 1. 결핵관리 요원의 여비보조
 - 2. 결핵관리 요원의 기동력 확보를 위한 장비구입
 - 3. 우수결핵 관리요원의 시상금
 - 4.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핵 사업비
- 제5조(납부방법) 수수료 및 진료비는 선납으로 하며, 수입증지로 납부하되 필요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5. 13.>
- **제6조(허위신청)** 허위신청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혹은 감액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.
- 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- 부 칙(제1123호, 2020.9.18)(서울특별시 금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)
-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 <개정 '97. 5. 21, '98. 5. 21, '99. 11. 15, 2000. 11. 24, 2005.12.28, 2006.12.29, 2007.09. 27., 2011.05.13., 2019.10.10.>

수수료 및 진료비(제2조 관련)

구 분	종 목	단 위	금 액	비고
1. 건강진단결과	가. 일반진단서	1통	500원	
서 및 진단서,제	나. 사체검안서	1통	5,000원	
증명	다.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	1통	위생분야종사자	건강진단결과서
	단결과서 또는 건강진단서		등의 건강진단	와 건강진단서를
			규칙제8조에서	동시에 발급할
			규정한 수수료	경우 수수료는
			액	'다' 항에 '마' 항
				을 더한 수수료
				액으로 한다.
	라. 사망진단서			
	마. 기타 사실공부에 의해	1통	500원	
	발급하는 증명서	1통	300원	
	바. 기발급증명서 추가발급			
	사. 1통초과 발급	1통	300원	
		_		
	아. 의료기록(CD) 사본발	1통	100원	제증명 전자 추
	급			가 발급시 무료
		l장	3,000원	단, 등록결핵환
 2. 항 결핵	고	1.01	0.0008	자는 무료
2. 형 결력 제 보급	가. 초치료처방	1인	2,000원	
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	ાં ગોરો = સો પો.	1개월분	0.0000	
	나. 재치료처방] 인 1 제의 브	2,000원	
3.유료접종	가. 간염	1개월분 보건복지부	보건소의 유료	
0.11 並出る	/1. 선표 나. 유행성출혈열	표준예방지		
	다. 장티푸스	침에	약품의 최근 구	
	라. 인플루엔자	따른다.	입가격으로 한	
	이 · 단원 면/기 	<u> </u>	다. 단, 10자리	
			이하의 금액은	
			1원 이상 49원	
			이하의 경우에	
			는 절사하고 5	
			는 관기에고 5	

			0원 이상 99원	
			이하의 경우에는 100원으로	
			한다.	
4. 검사	가. 일반건강검진	1회	6,500원	
	나. 체력측정검사]회	각각 건강보험	
	다. B형간염검사	1회	요양급여행위	
	라. C형간염검사	1회	및 그 상대가치	
	마. 골밀도검사]회	점수에 관한 보	1부위 추가 촬
	바. 동맥경화검사		건복지부 고시	영시 3,000원
			및 건강보험요	추가
			양급여비용의	※ 골밀도검사 긴
			내역에 관한 보	급의뢰는 관내 의
			건복지부 고시	료기관에 한한다.
			에 의한 보건소	
			의과 방문당 진	
			료비	
			17,000원	
	사. A형간염검사	1회	서울특별시 보	인ㆍ허가용이 아
	아. 수질검사	1회	건환경연구원	닌 것에 한한다.
			검사수가에 준	
			한다.	
5.삭제				
6.의과 진료비	항말라리아약제 예방적 투	1회	건강보험요양	
	여를 위한 처방전 교부		급여행위 및 그	
			상대가치 점수	
			에 관한 보건복	
			지부 고시 및	
			건강보험요양	

	급여비용의 내
	역에 관한 보건
	복지부 고시에
	의한 보건소 의
	과 방문당 진료
	비
7. 삭제	

관계 법 령

지역보건법

[시행 2022. 8. 18.] [법률 제18418호, 2021. 8. 17., 일부개정]

제25조(수수료 등)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,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지역보건법 시행규칙

[시행 2019. 10. 3.] [보건복지부령 제667호, 2019. 8. 19., 일부개정]

제10조(수수료 등)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와 진료비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